

미즈기와대책에 관한 새로운 조치에 대하여

*2021년 11월 30일~2021년 12월 31일까지 미즈기와대책 허가에서의 새로운 조치 (19)
 <외국인 신규입국제한 재검토>에 근거해 신규입국은 정지

새로운 조치

- ① 기업 등의 초청책임자 관리하에,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후 행동제한 완화
 (10일간 대기 → 3일간 대기 + 7일간 행동관리)
- ② 외국인의 신규입국 제한완화
 (단기 비즈니스 체류, 장기 체류의 신규입국을 허용)

일본인 귀국자 ·
외국인 재입국자

초청책임자 관리하에
신규입국을 인정
외국인
(단기 비비즈니스 · 장기체류)

- 초청책임자가 관리
- 백신접종완료
- 비비즈니스 왕래 등
- 비지정국·3일지정국출발

좌측 기재사항 이외

- 초청책임자가 관리
- 백신접종완료
- 단기 비비즈니스 등
- 비지정국·3일지정국출발

좌측 기재사항 이외

새로운 조치①의 대상
입국후 3일간 대기
+ 7일간 행동관리

현행 조치의 대상
입국후 14일간 대기
(일부의 백신 접종완료자는 10일간)

새로운 조치①+②의 대상
입국 후 3일간 대기
+ 7일간 행동관리

새로운 조치②의 대상
입국후 14일간 대기
(일부의 백신 접종완료자는 10일간)

➡ 3 페이지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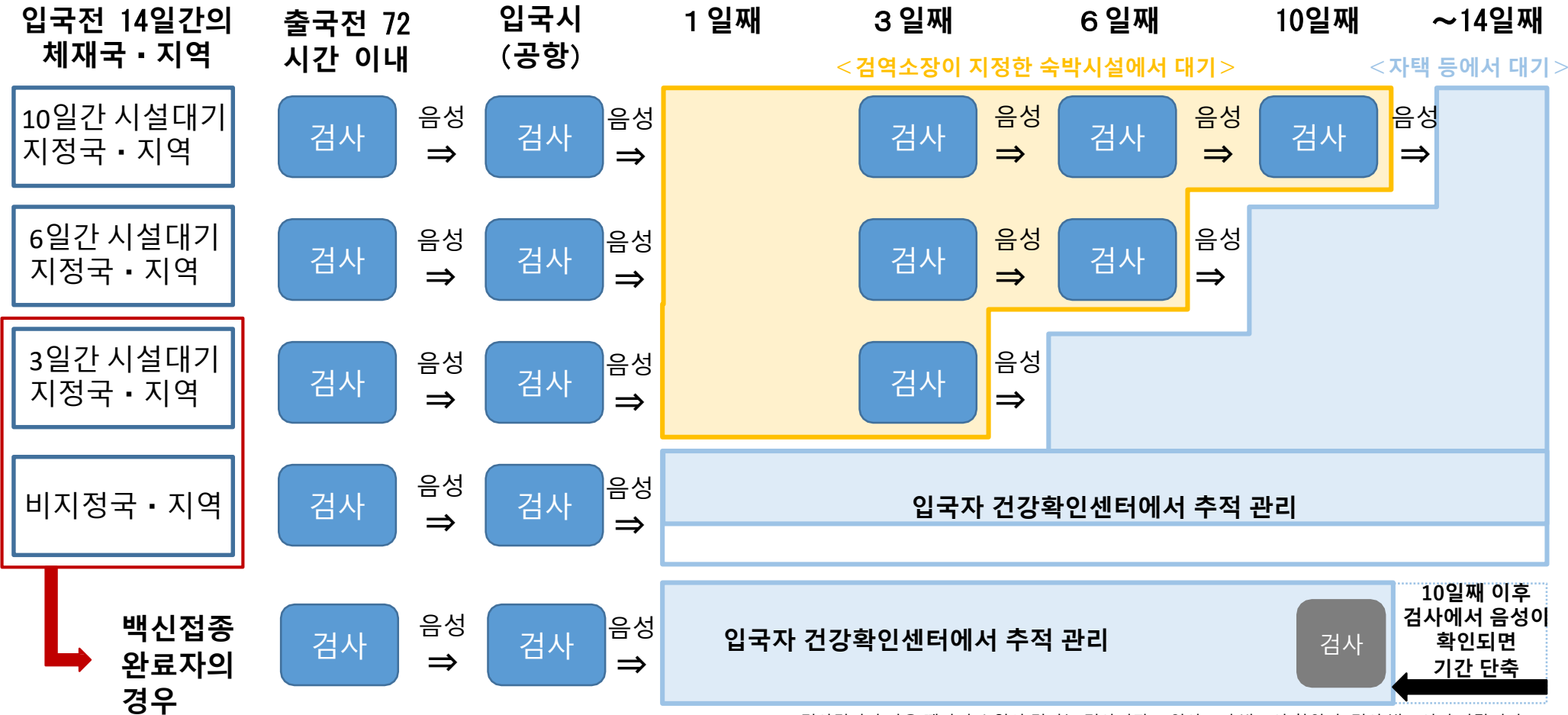
➡ 2 페이지로

➡ 3 페이지로

➡ 4 페이지로

현행의 미즈기와 조치 (초청책임자에 의한 관리 불필요)

- ① 체재국의 리스크에 따라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숙박시설에서의 대기나 검사를 추가 실시.
- ② 음성이 확인되어 자택 등에서 대기한 후에는 입국 후 14일간 추적조사 실시.
- ③ **백신 접종자(6일, 10일 대기 지정국가로부터의 입국자를 제외)에게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숙박시설이나 자택 등에서의 대기 기간, 추적조사 기간을 일부 단축.**



※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일이 걸리는 검사기관도 있사오니 반드시 확인 후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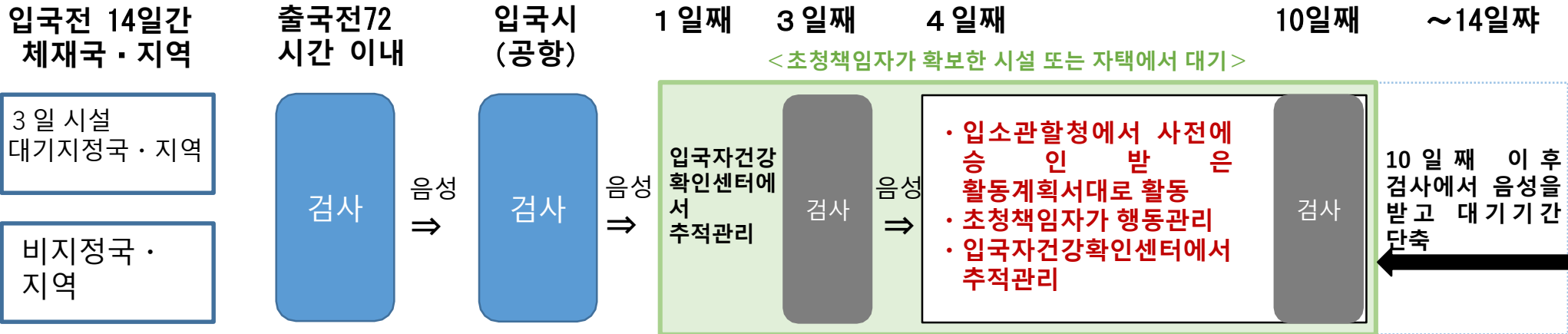
(참고) 최신 지정국·지역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외무성 해외 안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https://www.anzen.mofa.go.jp/info/pcwideareaspecificinfo_2021C127.html

미즈기와 대책과 관련한 새로운 조치에 의한 입국 (행동제한 완화 있음)

- ①~③ 중 하나에 속하는 입국자는 입국 전에 초청책임자 (기업 등) 가 업소관할지청에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치면 초청책임자의 관리하에 입국 후 대기기간 중 행동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
- ① 일본인 귀국자, 체류자격이 있는 재입국자, 업소관할지청이 상용·취업 목적으로 3개월 이하 단기 체류 또는 완화가 필요한 일정이 있다고 인정한 장기 체류 신규입국자이다.
 - ② 입국일 전 14일 이내에 10일 시설대기지정국·지역 또는 6일 시설대기지정국·지역에서 체재이력이 없다.
 - ③ 백신접종자이다.

<입국후 대기해제까지 흐름 (최단 스케줄의 경우) >



<행동제한 완화조치에 의해 가능해지는 활동의 일례>

※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일이 걸리는 검사기관도 있사오니 반드시 확인 후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.

활동 종류	그에 따른 조치
공공교통기관으로 이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내선 항공기, 철도 (좌석지정이 가능한 신칸센·특급열차로 제한), 버스 (좌석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), 여객선 (개실 또는 좌석지정이 가능한 편으로 제한), 택시 (운전사와 공간 분리가 가능한 차량에 한함) 중 하나를 사전예약하고 이용 직전 검사, 음식은 필요최소한 (수분보충을 할 경우에는 대화를 하지 말 것, 식사는 말없이 할 것, 음주는 피할 것) 등
집회·이벤트 참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전 검사 음식을 동반한 경우에는 주최자 등이 지정한 규칙에 따를 것
음식점 이용·회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전 검사, 제3자 인증 가게를 이용할 것, 원칙적으로 개실에서 실시하고 음주는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. 국내체류자와 회식하는 경우에는 참가자 전원이 회식 후 10일간 건강상태 관찰 (체온, 증상 유무 등)
일·연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활동이나 실습 등은 불가 거리 확보, 환기를 포함한 감염방지대책 실시

미즈기와대책과 관련한 새로운 조치에 의한 입국 (행동제한완화 없음)

○입국 후 대기기간 중 행동제한 완화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국인이라도 상용·취업 목적으로 3개월 이하 단기 체류를 할 경우에는 입국 전에 초청책임자 (기업 등) 가 업소관할지청에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초청책임자의 관리 하에서 신규입국이 가능합니다.

<입국후 대기 해제까지의 흐름>



※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일이 걸리는 기관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.